

의안번호	제205호
의결연월일	2004년 월 일 (제228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04년 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5호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신설(제5조의2)
- 나. 토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 조정
(제13조, 제16조의2, 제18조, 부칙)
 -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함
 - 토요일 휴무를 2004. 7. 1부터 월 2회, 2005. 7. 1부터는 전면시행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폐지함

- 연가일수를 1~2일 축소 운영(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1일
에서 3일로 확대(제23조 별표 3)

4. 의안전문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관계법규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근무시간)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

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제1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제23조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란중 출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신설〉</p>	<p>제5조의2(비밀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u>사항</u>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 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안)
<p><u>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 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u></p> <p><u>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 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u></p>	<p><u>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u></p> <p><u>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u></p>
<p><u>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소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u></p>	<p><u>제16조2(토요일 휴무제) ①도지사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안)																																				
②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토요일 휴무제----- ----- -----.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①----- -----.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6월미만</td><td>4</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7</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10</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3</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6</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9</td></tr> <tr><td>5년이상 6년미만</td><td>22</td></tr> <tr><td>6년이상</td><td>23</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6월미만</td><td>3</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6</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9</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2</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4</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7</td></tr> <tr><td>5년이상 6년미만</td><td>20</td></tr> <tr><td>6년이상</td><td>21</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 -----.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td>출산</td><td>배우자</td><td>1</td></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td>출산</td><td>-----</td><td>3</td></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	3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	3																																			

관계법규 발췌

□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 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